

임실군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임실군의회 의장



2023년 10월 13일

임실군의회 조례 제5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농업복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보건의료원

제1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농업복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업기술센터

라. 시설사업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
9조제2항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농업복지위원회”로 한다.